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71호

2019년 4월19일

금요일

선 람	기관위원장

공 고

○ 공	고 제 7 3 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
○ 공	고 제 7 3 7 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5
○ 공	고 제 7 4 7 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11
○ 공	고 제 7 5 3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
○ 공	고 제 7 5 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9
○ 공	고 제 7 5 6 호	수용재결 신청 열람 공고	100
○ 공	고 제 7 5 8 호	수용재결 신청 열람 공시 송달공고	105
○ 공	고 제 7 5 9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0
○ 공	고 제 7 6 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26
○ 공	고 제 7 6 8 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127
○ 공	고 제 7 7 4 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129
○ 공	고 제 7 7 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131
○ 공	고 제 7 7 9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133
○ 공	고 제 7 8 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136
○ 공	고 제 7 8 9 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38
○ 공	고 제 7 9 0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141
○ 공	고 제 7 9 1 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144
○ 보 건 소 공 고 제	4 2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145

고 시

○ 고	시 제 5 2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147
○ 고	시 제 5 3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151
○ 고	시 제 5 4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154
○ 고	시 제 5 5 호	우정아파트1동2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157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73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4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폐지이유

- 출산장려시책 전환(셋째아 이상 신생아보험 지원에서 출산장려금지원으로)
-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2015. 8. 13.)」 관련, 중복사업 폐지 권고에 따라 복지재정 효율화와 재정 건전성 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보육정책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5883, FAX 453-588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붙임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 · 개정안 내용	의견	비고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737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9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랐

- 기 간 : 2019년 4월 15일 ~ 5월 7일
- 장 소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
 - ※ 남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인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incheon.go.kr/land_info/)에서 조회 가능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9년 4월 15일 ~ 5월 7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
- 제출방법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7]

Opinions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opinion hearing period expires	
Person submitting opinion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landowner	
Subject Individual Lot	Address & Lot No.				
	Land Category				
	Actual Use				
Grounds for submitting opinions	Perused Price			Submitting Persons's Opinion	
	KRW/ m ²			KRW/ m ²	
Reasons to submit opinions					

Pursuant to Paragraph (5) in Article 10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Paragraph (1) in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same Act, I submit an opinion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as above.

Date:

Person submitting opinion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opinion(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	--	------------

Proceedings

Filing

→

Receipt

→

Verified by
Appraisers

→

Reveiw of Local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Committee

→

Approval

→

Notification

Person submitting
opinion

The head of City, Gun, Gu

의견제출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땅값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0만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18. 1. 1.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조사·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 지역 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 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747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대 상 : **누7561, **보5224 (첨부파일 참조)

2. 기 간 : 2019. 4.15.(월) ~ 4.30.(화)

3. 내 용

가.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분(2019년4월분)공시송달 내역

순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위반항목	우편번호	주소
1	**누7561	김*운	2019-04-12	폐문부재	안개등 미인증 LED설치	2164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번길**,***동***호(논현동,***** ****)
2	**보5224	이*용	2019-04-12	폐문부재	안개등 미인증 LED설치	2157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동*****호(간석동,***** 아파트)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75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구 조례 제명 통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우리구 조례 제명 통일(제명 및 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21조제6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100분의 50이내 감액 규정 신설(안 제31조제5항, 제6항)
- 상위법령 및 조례 중복 조항 삭제(안 제3조제5항, 제3조의3, 제3조의4, 제11조, 제40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0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2조 등)

4.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제29조, 제35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272, FAX 453-22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 개정규칙(안):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구 조례 제명 통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우리구 조례 제명 통일(제명 및 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21조제6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100분의 50이내 감액 규정 신설(안 제31조제5항, 제6항)
- 상위법령 및 조례 중복 조항 삭제(안 제3조제5항, 제3조의3, 제3조의4, 제11조, 제40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0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1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2조 등)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제29조, 제35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를 “재산관리관 지정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심의회”를 “남동구공유재산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3조의3 및 제3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취득·처분에 관한”을 “취득·처분과 관련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용도폐지에 관한”을 “용도폐지와 관련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유재산에 관하여”를 “공유재산과 관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재산·일반 재산에 대한”을 “행정재산·일반재산의”로 한다.

제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처분에 대한”을 “처분”으로, “그 서식과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회

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지방회계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의 재정공시의 방법으로 같음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 중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를 “재산 중 관리하는 데에”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따르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토지에 대하여”를 “해당 토지”로 한다.

제16조 중 “규정에 의하되”를 “규정을 따르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당해재산에 대하여”를 “이 경우 해당 재산에”로, “허가시”를 “허가 시”로 한다.

제19조제6호 중 “재산에 대한”을 “재산과 관련된”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제1호 중 “대하여 사용·수익”을 “사용·수익”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의하여 행정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제21조”를 “제21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재산을 관리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행정재산에 대하여는”을 “행정재산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산에 대하여”를 “재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2조 중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 내지 제36조”를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한다.

제23조 중 “잡종재산을”을 “일반재산을”로, “대부재산에 대한”을 “대부재산과 관련된”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재산에 대하여는”을 “재산은”으로, “의거”를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등”이라 한다)”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를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의하여 구청장”을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5호”를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1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를 각각 “호 재산의 대부료 요율은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를 “호 재산의 대부료 요율은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의 제목 “(토석채취료 등)”을 “(토석의 매각대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를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중 “대부료 산출에 있어”를 “대부료를 산출 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를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다음의”를 “별표 1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분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제31조제1항제1호바목 중 “가목 내지 마목”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가목 내지 마목에”를 “가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마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에”를 “가목부터 라
목까지의 규정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
에”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제26조의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
의 기업 또는 조합이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
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
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부분에 대하여”를 “부분을”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를 “사유건물이 점유·사용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구의 필요에 의하여”를 “구가 필요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익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를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로, “호와”를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4장제3절(제40조)을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별표]의”를 “때에는 별표 2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별표]”를 “따라 별표 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별표]상”을 “따른 별표 2 상”으로 한다.

제47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임차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1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4조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5조 단서 중 “제4호 내지 제8호는 1급 내지”를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비는 1급 및”으로 한다.

제56조 중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0조의”로, “1”을 “어느 하나”로 한다.

제57조 중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을 “물품관리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이에 등재”를 “관사용 비품대장에 기록하고”로 한다.

제58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0조 중 “제49조 내지 제59조”를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수에 대한”을 “징수”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4조 중 “당해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65조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용면적 산출 산식(제30조 관련)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관리책임) ① <u>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u>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u>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u>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고 한다)</u>를 둔다.	<u>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u> 제1조(목적) ----- <u>남동구</u>----- ----- ----- ----- ----- -----. 제2조(관리책임) ① <u>남동구청장</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재산관리관 지정에</u> ----- ----- -----.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 ----- ----- ----- ----- <u>남동구공유재산심의회의</u>----- ----- -----.

② ~ ④ (생 략)

⑤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3조의3(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삭 제>

<삭 제>

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
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
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생략)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
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생략)
2.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일반재
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
지

가. ~ 다. (생략)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

-.

1. ----- 취득·처분과 관련된

2. -----

-- 용도폐지와 관련된 --

3. (현행과 같음)

4. -----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

--

② -----

-----.

1. (현행과 같음)

2. -----

따른 -----

3. (현행과 같음)

4. ----- 행정재산·일반재

산의 -----

가. ~ 다. (현행과 같음)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

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
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
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
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
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
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
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
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
사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④ (생 략)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 따라 -----

----- 처분 -----

----- 이는 전산자
료로 같음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
산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지방회
계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의
재정공시의 방법으로 같음할 수 있
다.

제7조(실태조사) ① -----

-----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
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

② ----- 따라 -----

-----.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재산의 집단화) -----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 또는 위치가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

- 재산 중 관리하는 데에 -----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의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따르지 -----
법령에 따라 -----

-----.

② ----- 제1항에 따라 -----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 따른 -----

-----.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재산에 한하며,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9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생략)

제19조의2(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

해당 토지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무상사용기간) ----- 규정을 따르며 -----.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 이 경우 해당 재산에 ----- 허가 시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수익허가) -----.

1. ~ 5. (현행과 같음)

6. ----- 재산과 관련된 -----

7.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

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생략)

②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2. (생략)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 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하여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사용·수익-----

2. (현행과 같음)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행정재산-----
----- 제21조
지의 규정-----

-.

② ----- 관리수탁자-----

----- 행정재산은 -----

③ -----
----- 재산의 -----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생략)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 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

④ (현행과 같음)

⑤ -----

해당 -----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남동구-----
-----.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
----- 대부재산과 관련된 -----

-----.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치) ① -----

----- 재산은 -----
----- 따라 -----
----- 그 밖에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
----- 등 -----
-----.

1. -----
-----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8조에 따른 지방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생략)

6.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7조(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

3. ----- 따른 지식산업센터-----

4. ----- 따라 인천광역시장-----

5. (현행과 같음)

6. ----- 제5호까지의 규정---

제27조(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

----- 해당 -----

② ----- 호 재산의 대부료 요율

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2.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
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2. (생략)

3. 주거용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다
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
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
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
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생략)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
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
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

은 해당 -----
-----.

1. 2. (현행과 같음)

③ ----- 호 재산의 대부료 요율
은 해당 -----
-----.

1. 2. (현행과 같음)

3. -----.

----- 해당 -----
-----.

4. (현행과 같음)

④ ----- 호 재산의 대부료 요율
은 해당 -----
-----.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
5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

3. -----
-제19조제1항에 따라 -----

적 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생략)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를 합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4. (현행과 같음)

<삭제>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삭제>

시가적용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
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
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
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
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
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
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
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
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
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
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
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
산하여 결정한다.

②·③ (생략)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
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
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③ 제1항-----

-----.

④ -----

----- 그 밖의 -----

-----.

<삭 제>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 대부료를 산출 할 때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부지평가
액을 결정할 때 -----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사용·수익허
 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
 면적-----
 -----해

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사용·수익허
 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
 (전용·공용면적 합계)-----

 -----해

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생략)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
 및 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
 료 (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 별표 1의 -----
 -----.

<삭 제>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1. -----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 마. (생략)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 라. (생략)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분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 마. (현행과 같음)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에 -----

- 따라 -----

2.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를」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 라. (생략)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④ (생략)

<신설>

따라 -----

3.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 따라 -----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②-----

-----.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신 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
----- 따라 -----

-----.

1. ~ 3. (생략)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략)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삭제

2.·3. (생략)

③·④ (생략)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생략)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따른 -----

-----.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 따른 -----

-- 부분을 -----
-----.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행정안전부장관 -----
-----.

2.·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 9.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3호에 따라 일반채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 5. (생략)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채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

-----.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

----- 따른 -----

----- 사유건물이

점유·사용하고 -----

4. · 5. (현행과 같음)

② -----

----- 행정안전부장관

관-----

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
·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 4. (생략)

④ (생략)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1. -----
----- 따라 -----
--

2. 구가 필요하여 -----

3.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④ -----

----- 행
정안전부장관-----

-----.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

----- 행정안전부장관-----

-----.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제3절 신탁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분양형신탁·임대형신탁·혼합형신탁으로 한다.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 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

② -----

- 행정안전부장관-----
---.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 호의 어느 하나와 ----.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

----- 따라 -----

-----.

② ----- 따른 -----

괴 위험 · 신설기관 · 임차 · 노후 · 협소 · 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 ·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 · 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 · 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 · 부구청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 2. (생략)

-----.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
----- 때에 별표 2의

--- 따라 -----
-----.

1. ~ 7.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별표 2 -----

-----.

③ -----

----- 따른 별표 2 상 -----
-----.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

----- 따라 -----
-----.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구청장 · 부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임차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
-----.

1. · 2. (현행과 같음)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 · 기타 관
사 등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직무수행
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 2급 관
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
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
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사용자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
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
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
출할 수 있으며, 제4호 내지 제8호
는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의 규정
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3. ----- 그 밖의

제51조(사용허가) -----
----- 따라 -----

-----.
-----.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

-----.

1. · 2. (현행과 같음)

3. ----- 따
른 -----

4. 그 밖의 -----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제4호부터 제8호까
지의 경비는 1급 및 -----.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의 ---
----- 어
는 하나-----

을 면제할 수 있다.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 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 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

-----.

제57조(비품의 관리) ----- 물품관리관-----

----- 따라 -----

----- 관사용 비품대장에 기록하고 -----

-----.

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60조(준용) -----

-----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

----- 따른 -----

----- 해당 -----

다.

② (생략)

제61조의2(변상금 징수의 유예) ① ·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에 대한 유예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 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삭제

2. ~ 4. (생략)

② (생략)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변상금 징수의 유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징수 -----

-----.

1. · 2. (현행과 같음)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 행정안전부장관

관-----

-----.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 행정안전부장관-----

-----.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따른

-----.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생략)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64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 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그 밖에 -----

2. ----- 그 밖의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4조(합필의 신청) -----

----- 구청장 -----
-----.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

----- 따라 -----
----- 해당 -----

-----.

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
평가업자에 의뢰한다.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

제67조(시행규칙) ----- 필
요-----.

[참고자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1호(사용·수익허가의 방법)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제13조제3항제22호(사용·수익허가의 방법)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

제29조제1항제20호(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25호(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①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석채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④ 토석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500만원 미만 : 납부통지일부터 10일 이내
2.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납부통지일부터 15일 이내
3. 1천만원 이상 :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

⑤ 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가 토석을 채취한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에 기재된 반출기간 이내에 국유림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

소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 단서에 따라 반출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토석 반출기간연장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75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와 제명 통일(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3항, 제12조)
- 사용 용어의 통일(안 제2조, 제4조, 제24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제22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3조 등)

4.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272, FAX 453-22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 개정규칙(안):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와 제명 통일 등(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3항, 제12조)
- 사용 용어의 통일(안 제2조, 제4조, 제24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제22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3조 등)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남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재산관리업무주관부서장”을 “재산관리업무 총괄 전담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를 “재산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재산관리관에 대하여”를 각각 “재산관리관에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총괄사무 부서장”을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항에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5조제1항에”를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를 “화재 또는 그 밖의 사고로”로 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의한”을 “따른”으로, “서식에 의한다”를 “서식으로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가 있는 때”를 “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서식에 의한다”를 “서식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지”를 “및”으로 한다.

제16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 중 “교환함에 있어서 그 교환차액은 재산인도전”을 “교환할 때 교환차액은 재산인도 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격 평정조서”를 “가격평정조서(별지 제2호 서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재산의 위치를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를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과 관련하여”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재산관리관은”을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재하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기록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과 및 청·소의 장”을 “업무주관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재산관리대장

가. 공용재산

나. 공공용재산

다. 기업용재산

라. 보존용재산

3. 일반재산관리대장

제2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를 “재산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중 “규정에 의한 통지”를 “통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별지제4호 서식에 의한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를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산에 대하여”를 “재산을”로, “의하여”를 “따라”로, “별지제5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를 “구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무과”를 “총괄 전담부서”로 한다.

제25조 중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

를 “업무주관부서장은 임차재산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로 한다.

제26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서식에 의한다”를 “서식으로 한다”로 한다.

제27조 중 “서식에 의한다”를 “서식으로 한다”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무과는”를 “총괄 전담부서는”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는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한다.

제32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서식에 의한다”를 “서식으로 한다”로 한다.

제33조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61조제1항의 사전통지서는 별지 제20호의1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2 서식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4조의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을 “사용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무주택자에게사용을”을 “무주택자에게 사용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서식에 의한다”를 “서식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을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를”로,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관사입주신고서(별지 제24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5호 서식)”로 한다.

제36조 중 “구유재산에 관하여”를 “구유재산과 관련하여”로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20호의1 서식, 별지 제20호의2 서식, 별지 제20호의3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 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 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 기
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와 관련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
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의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잔여 미
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본
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
하고 그 증서를 본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본 구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그 밖에 본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한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

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구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9호 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남동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

제2조 대부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일간)

제3조 대부료는 연액 금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 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앞에서 말한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
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한
다. “을”은 대부받은 재산과 관련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6조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의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채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 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갑이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 ·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 대부채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채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고 각각 1통씩 갖는다.

년 월 일

임대자(갑)

남동구청장 ○○○ (인)

임차자(을)

(인)

주 :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
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
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도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 납부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남동구청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재산소재지	지번	재산종별	총수량	대부수량	평가액	비 고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수익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구청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별지 제20호의1 서식]

(앞면)

변 상 금 부 과 사 전 통 지 서						
대상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			점유면적 (㎡)	부과기간	변상금 [예상] (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 적(㎡)				

「남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1조 규정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불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불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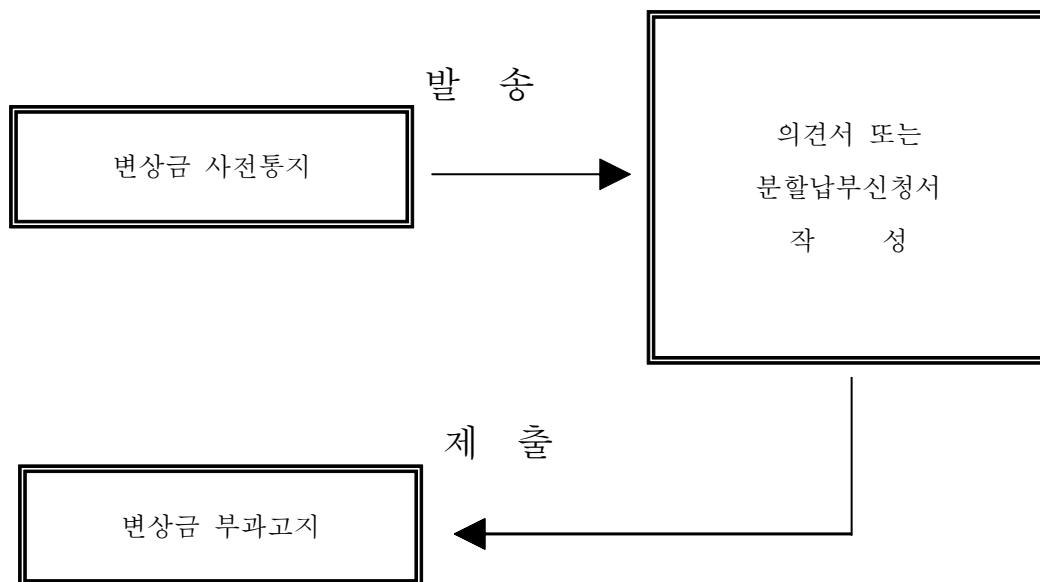
남동구청장 (인)

귀 하

(뒷면)

※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
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처 리 기 관	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별지 제20호의2 서식]

변 상 금 부 과 사 전 통 지 에 대 한 의 건 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항 목	통 지 내 용	의 건
<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5호 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관사를 명도 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남동구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6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남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 -----.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구"라 한다)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이하"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산관리업무 주관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남동구----- ----- ----- ----- ----- -----.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산 이외의 재산과 일반재산 및 구유재산관리 총괄사무 : 재산관리업무주관부서장	7. ----- ----- ----- 재산관리업무 총괄 전담부서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생략)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 및 총괄재산관리관이 지정하는 재

③ -----

----- 재산은 -----

-----.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재산관리관에게 -----

-----.

③ ----- 재산관리관에게 -----

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전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총괄사무부서장은 구유재산관리의 총괄적 기능을 수행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 ~ ⑥ (생략)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의 협조를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장-----

-----.

② -----

----- 따른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①

----- 따라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② -----

의하여 출자하거나 관리자를 정하여 위임·위탁하는 경우 수입 기관의장 또는 수탁자를 분임 관리관으로 본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에의하여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 ① (생략)

② 제15조제1항에 용도폐지된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인계하고자하는 경우도 제1항과 같다.

제10조(협의사항) 사업 등을 시행하는 업무주관과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으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는때에는 당해 재산관리관과 조치방안 및 절차를 사전 협의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항 중 두 개 이상을 중복하여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협의하여

따라 -----

-----.

제8조(감수인의 지정) -----

----- 제
3항에 따라 -----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9조(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

-----.

제10조(협의사항) -----

----- 해당 -----

-----.

야 한다.

1. ~ 4. (생략)

제11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
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
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
한 때에는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1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
상금 지급) 「인천광역시 남동
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63조 규정에 의
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
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공유재산에 편입
할 목적으로 기부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갖추어 미리 구청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

1. ~ 4. (현행과 같음)

제11조(화재 등의 보고) ① -----
----- 화재 또는 그 밖의 사
고로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
상금 지급) 「공유재산관리 조
례」-----
----- 따
른 -----
-- 서식으로 한다.

제13조(기부채납) ①-----

규정에 따라 -----

-----.

1. ~ 6.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

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4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
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생략)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
청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
한다.

③ 일반재산의 용도지정이나 변
경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2
항과 같다.

제16조(교환 및 양여) 재산관리관
이 공유재산의 교환 또는 양여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44조
및 제4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6. (생략)

-----.

제14조(매각신청) -----
----- 때--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15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서식으로
한다.

③ -----
----- 및 -----
-----.

제16조(교환 및 양여) -----

-----.
-----.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교환차액은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9조(취득보고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부서장 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7. 그 밖에 -----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
--- 교환할 때 교환차액은 재산인도 전-----
-----.

제18조(가격평정) ① -----

가격평정조서(별지 제2호 서식)
-----.

② -----

-----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과 관련하여 -----
-----.

제19조(취득보고 등) ① -----

-----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
----- 따라 -----
----- 그 밖의 -----
-----.

② -----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고 재산관리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략)

제20조(매수신청) ① 실·과 및 청·소의 장은 공유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1. ~ 9.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생략)

제21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

----- 기
록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매수신청) ① 업무주관부
서장-----

-----.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신축 등의 신청) ① -----

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생략)
2. 행정재산관리대장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 ② -----
- 따라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

---.

1. (현행과 같음)
2. 행정재산관리대장
 - 가. 공용재산
 - 나. 공공용재산
 - 다. 기업용재산

3. 보존재산관리대장4. 잡종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
· 건물 · 공작물 · 입목죽 ·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
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
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
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
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전산
입력으로 갈음하는 경우관리자
및 정보저장장치를 지정하고 전
산입력 내용의 보존 · 관리를 위
하여 부분을 제작 ·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생략)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
체 없이 재산관리 대장과 도면
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
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

라. 보존용재산3. 일반재산관리대장<삭 제>

② ----- 재산관리대장(별
지 제3호 서식)은 -----

<후단
삭제>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현
행과 같음)

② ----- 통지 --

-----.

제24조(증감이동보고) ① -----

고 별지제4호 서식에 의한 구유 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제5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이 조 각 항의 결과를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 주무과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② -----
-- 따른 -----
-----.

③ -----
--- 재산을 -----
----- 따라 -----
---- 구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
--.

④ -----
----- 총괄 전담부서-----
-----.

제25조(임차재산) -----
----- 업무주관부서장은 임차재산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
---.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
례 제19조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27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
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유
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요재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재산의 경우 별도의 서식을
작성 대체하거나 부가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 재산관리 주무과는 법 제47
조 및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현황」을 작성 및 보
고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
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
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
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
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 따른 -----

----- 서식으로 한다.

제27조(대부계약) -----
----- 서식으
로 한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① ----- 따른 -----

----- . 다만, -----

1. ~ 7. (현행과 같음)

② ----- 총괄 전담부서는 --
----- 따른 -----

-----.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

----- 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

1. ~ 7. (생 략)

② (생 략)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토석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정 조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제33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 서식에 의하고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제35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따라 -----

-----.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는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한다.

제32조(토석가격평정조서) -----
----- 따른 -----

서식으로 한다.

제33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1조제1항의 사전통지서는 별지 제20호의1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2 서식으로 한다.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4조의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한다.

제35조(관사의 관리) ① -----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관사관리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 국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 사용대상 -----

-----.

-----.

② ----- 따른 -

----- 서

식으로 한다.

③ ----- 따라 --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4

호 서식)를 -----

----- 관사입주신

고서(별지 제24호 서식) 및 서

약서(별지 제25호 서식)-----

-----.

제36조(준용) 국유재산과 관련하

여 -----

-----.

[참고자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756호

수용재결신청 열람 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9. 4.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수임자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3. 공고 및 열람기간 : 2019. 4. 16. ~ 2019. 5. 1.(15일간)
4.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설과[☎032)453-2717]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별 첨’
6. 기타사항

의견이 있으신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열람공고 기간 내에 남동구청 건설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재결신청내역(운연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공부지목	실제지목	지적(m ²)		분모	편입면적	지분	미래제한감정평가법 인		취티엔비감정 평가법인		신원감정평가법 인		평균 단가	보상금액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	남동구운연동	195-10	195-10	답	답	349	-		349	1/1	403,000	140,647,000	389,000	135,761,000	381,000	132,969,000	391,000	136,459,000	우*서	인천광역시계양구봉오대로***번길***동***호(**동,**아파트)			
12	남동구운연동	489-21	489-69	전	전	2,917	1,499		1,499	1/1	424,000	635,576,000	416,000	623,584,000	405,000	607,095,000	415,000	622,085,000	성*영	부천시중구춘의동**-*			
	합계													₩759,345,000		₩740,064,000		₩758,544,000					

수용재결신청내역(운연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규격	수량및면적	단위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주)		(주)티앤비감정평가법인		(주)감정평가법인신원		보상금액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성명	주소		
1	아리요리구아리마	195-119	매실나무		12	그루	일괄	960,000	일괄	960,000	일괄	960,000	960,000	미상			
2	아리요리구아리마	195-6	매실나무		10	그루	일괄	800,000	일괄	800,000	일괄	800,000	800,000	미상			
3	아리요리구아리마	195-10,195-5	비닐하우스		194	m ²	18,400	3,569,600	18,000	3,492,000	17,500	3,395,000	3,485,530	우*서	인천광역시계양구봉오대로* **번길**, ***동*** 호(**동,* *아파트)		
			샌드위치판넬		9	m ²	200,000	1,800,000	200,000	1,800,000	200,000	1,800,000	1,800,000				
			물탱크		2	개	일괄	200,000	일괄	200,000	일괄	200,000	200,000				
			관정		1	개	식	1,600,000	식	1,500,000	식	1,500,000	1,533,330				
			환풍기		6	개	일괄	300,000	일괄	300,000	일괄	300,000	300,000				

			스프링쿨러		150	개		일괄	240,000	일괄	240,000	일괄	240,000	240,000			
			CCTV		8	개		일괄	200,000	일괄	200,000	일괄	200,000	200,000			
			보도블럭		185	m ²		16,000	2,960,000	15,000	2,775,000	14,800	2,738,000	2,824,330			
			이동식화장실		1	식		식	300,000	식	300,000	식	300,000	300,000			
			전기시설	5kW	1	식		식	650,000	식	650,000	식	650,000	650,000			
			집기비품		1	식		식	1,200,000	식	1,200,000	식	1,200,000	1,200,000			
			난(2년)		800	분		일괄	2,200,000		2,160,000	일괄	2,080,000	2,146,660			
			철쭉(2년)		2700	주								-			
4	아미노요리-아미노	489-69	콘테이너		1	개		식	300,000	식	300,000	식	300,000	300,000	정*영	부천시중구춘의동* ***-	
5	아미노요리-아미노	489-69	평상		1	개		식	100,000	식	100,000	식	100,000	100,000	정*영	부천시중구춘의동* ***-	
			합계						₩17,379,600		₩16,977,000			₩17,039,850			

의견서		
1.제	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견		
4.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9.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남동구청장 귀하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758호

수용재결신청 열람 공시송달 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를 하려고 했으나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수입자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3. 공고 및 열람기간 : 2019. 4. 16. ~ 2019. 5. 1.(15일간)
4.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설과[☎032)453-2717]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금액 등의 세부사항 별첨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표시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인천 남동구)	지번	물건의 종류	수량	단위	성명	주 소 (현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운연동	195-1 19	매실나무	12	그루	미상				
운연동	195-6	매실나무	10	그루	미상				

6. 기타사항

의견이 있으신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열람공고 기간 내에 남동구청 건설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재결신청내역(운연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공부지목	실제지목	지적(㎡)		분모	편입면적	지분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티엔비감정평가법인		신원감정평가법인		평균 단가	보상금 액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	강화구 아문동 195-10	195-10	195-10	답	답	349	-		349	1/1	403,000	140,647,000	389,000	135,761,000	381,000	132,969,000	391,000	136,459,000	우*서	인천광역시계양구봉오대로***번길**,**동***호(*동,**아파트)			
12	강화구 아문동 489-21	489-21	489-69	전	전	2,917	1,499		1,499	1/1	424,000	635,576,000	416,000	623,584,000	405,000	607,095,000	415,000	622,085,000	성*영	부천시중구촌의동***-*			
	합계												₩759,345,000		₩740,064,000		₩758,544,000						

수용재결신청내역(운연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면적	수량 및 면적	단위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주)		(주)티앤비감정평가법인		(주)감정평가법인신원		보상금액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성명	주소		
1	남동구운연동	195-119	매실나무		12	그루	일괄	960,000	일괄	960,000	일괄	960,000	960,000	미상			
2	남동구운연동	195-6	매실나무		10	그루	일괄	800,000	일괄	800,000	일괄	800,000	800,000	미상			
3	남동구운연동	195-10, 195-5	비닐하우스		194	m ²	18,400	3,569,600	18,000	3,492,000	17,500	3,395,000	3,485,530	우*서	인천광역시계양구봉오대로***번길***동***호(**동, **아파트)		
			샌드위치판넬		9	m ²	200,000	1,800,000	200,000	1,800,000	200,000	1,800,000	1,800,000				
			물탱크		2	개	일괄	200,000	일괄	200,000	일괄	200,000	200,000				
			관정		1	개	식	1,600,000	식	1,500,000	식	1,500,000	1,533,330				
			환풍기		6	개	일괄	300,000	일괄	300,000	일괄	300,000	300,000				
			스프		150	개	일괄	240,000	일괄	240,000	일괄	240,000	240,000				

제147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

2019. 4. 19.금요일

			링쿨러														
			CCTV		8	개		일괄	200,000	일괄	200,000	일괄	200,000	200,000			
			보도블럭		185	m ²		16,000	2,960,000	15,000	2,775,000	14,800	2,738,000	2,824,330			
			이동식화장실		1	식		식	300,000	식	300,000	식	300,000	300,000			
			전기시설	5kW	1	식		식	650,000	식	650,000	식	650,000	650,000			
			집기비품		1	식		식	1,200,000	식	1,200,000	식	1,200,000	1,200,000			
			난(2년)		800	분		일괄	2,200,000		2,160,000	일괄	2,080,000	2,146,660			
			철쭉(2년)		2700	주								-			
4	남동구연호동	489-69	콘테이너		1	개		식	300,000	식	300,000	식	300,000	300,000	성*영	부천시중구촌의동**	
5	남동구연호동	489-69	평상		1	개		식	100,000	식	100,000	식	100,000	100,000	성*영	부천시중구촌의동**	
			합계						₩17,379,600		₩16,977,000			₩17,039,850			

의견서		
1.제	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견		
4.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9.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남동구청장 귀하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75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조문 체계정비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우리 구 조례 제명 통일(제명 및 안 제1조, 제2조제1항)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반영 (안 제5조 별표1, 제24조의2, 제29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0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 조문 체계정비 (제11조의2, 제17조, 제18조, 제24조)

4.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제5조 별표1, 제24조, 제25조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274, FAX 453-22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 개정규칙(안):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조문 체계정비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반영 (안 제5조 별표1, 제24조의2, 제29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0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 조문 체계정비 (제11조의2, 제17조, 제18조, 제24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소모품의 관리,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
-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제5조 별표1, 제24조, 제2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를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전단 중 “인천광역시남동구”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도모함을 목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을 “남동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단.과.소”를 “실·담당관·과·소”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출납보관에 관한”을 “출납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물품관리에 관한”을 “물품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등에 관한”을 “등의”로 한다.

제5조 후단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2월 31일에 종료한다”를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 후단 중 “실.과장은”을 “부서장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소모품에 한한다”를 “소모품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2절 출납”을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제2장 출납”을 삽입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의”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 을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중” 을 “호의” 로 한다.

제19조 앞에 “제3절 보 관” 을 삭제한다.

제19조 앞에 “제3장 보관” 을 삽입한다.

제20조제1항 중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을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24조 앞에 “제4절 장 부” 를 삭제한다.

제24조 앞에 “제4장 장부” 를 삽입한다.

제2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서대장

제24조제4항 중 “장부중의 내용을” 을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태그를 붙인 물품의 관리방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25조제2항 중 “제1항에서의” 를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26조 중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을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으로 한다.

제27조 앞에 “제5절 검사 및 인계” 를 삭제한다.

제27조 앞에 “제5장 검사 및 인계” 를 삽입한다.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작성 또는 날인 등의 절차는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제31조 중 “경질” 을 “교체” 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 품종 구분 기준(1)의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u> <u><신 설></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인천광역시 남동구</u>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u>도모함을 목적으로</u>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u>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u>(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u>실.단.과.소에</u>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생략)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u>출납보관에 관한</u>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u>물품관리에 관한</u>	<u>남동구 물품관리 조례</u> <u>제1장 총칙</u> 제1조(목적) ----- <u>남동구</u> ----- ----- ----- ----- <u>목적</u>-----. 제2조(관리책임) ① <u>남동구청장</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실 · 담당관 · 과 · 소에</u>-----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 ----- ----- <u>출납보관</u>----- -----. ② ----- ----- <u>물품관리</u> -----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 ③ (생략)

제2절 출납

③ -----

----- 등의 -----
-----.

제5조(물품의 분류) -----
----- 따른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
----- 따른다.

제7조(연도구분) ① -----
-----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

따른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

----- 부서장은 -----

----- 따라-----.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
소모품만 해당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 5. (생 략)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
한 것은 전적가격

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
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
는 추정가격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
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의거 구청장의 결재를 받
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
회 중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
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장 출납

제14조(물품의 가격) -----
----- 따른다.

1. ~ 5. (현행과 같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
정) ① -----
어느 하나 -----

1. ~ 8. (현행과 같음)

② -----
----- 호의 -----

1. ~ 5. (생략)

③ (생략)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⑧ (생략)

제3절 보관

<신설>

제2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과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생략)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생략)

제4절 장부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⑧ (현행과 같음)

<삭제>

제3장 보관

제20조(보관책임) ① -----

-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신 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 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신 설>

제25조(장부의 작성) ① (생략)

② 제1항에서의 장부작성은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한다.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구 소관에

제4장 장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도서대장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

제24조의2(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태그를 붙인 물품의 관리방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25조(장부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절 검사 및 인계

<신 설>

제29조(물품검사서) ①·② (생략)

<신 설>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
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
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
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

<삭 제>

제5장 검사 및 인계

제29조(물품검사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작
성 또는 날인 등의 절차는 전자문
서를 이용할 수 있다.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
----- 교체-----

-----.

<삭 제>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2018. 7.)

1. 물품관리의 개요

2. 관리대상 물품

가. 관리대상

나. 관리방법

다. 소모품의 관리

1) 소모품 의의

-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립·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OA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합 완성되는 것으로서 전체를 1개의 단일물품으로 관리가 곤란한 물품) 또는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휴대용으로서 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품) 등 (단, 무기 및 탄약류는 제외)

2) 비소모품 의의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3) 소모품의 수불관리

- 취득금액의 규모가 큰 소모품, 희귀 소모품,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 등 주요 소모품은 '소모품대장'에 수불상황 기록관리

- 보관중인 소모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운용부서에 불출하여 관리중인 소모품에 대하여는 사용공무원이 관리

4) 유의사항

-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소모품에 대하여는 재고운용수준을 정하여 관리
 - 기록관리가 불필요한 물품까지 소모품대장을 정리함으로써 비능률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

Ⅲ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

1.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가. 추진배경

- 컴퓨터, 비품 등 자치단체 물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 이에 대한 관리의 비전산화 및 업무의 복잡화, 부정확성, 비효율성 등 행정력 낭비
- 지방자치단체 소유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및 물품의 취득 사용 처분과 관련한 이력관리 등을 수작업으로 처리
- 전자태그를 기반으로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투명성의 극대화 등 자치단체 물품의 전자태그관리시스템의 도입 필요성 대두

< 용 어 정 리 >

- ◇ (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on)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RFID 태그에 사용 목적에 알맞은 정보를 저장하고, 적용대상에 부착한 후 판독기를 통하여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기술
- ◇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전파식별 표지와 리더기를 이용하여 물품정보를 기록·보관·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축한 물품관리 전자업무처리시스템

나. 기본방향

- 자치단체 물품의 취득에서 폐기까지 Life-Cycle로 관리
- 전자태그 기반의 자동화 및 실물위주 물품관리에 의한 예산절감
- 전자태그를 이용하여 물품자동인식 및 물품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물품관리 업무생산성 제고
- 정확한 물품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지원 및 자치단체 물품관리 체계 구축

2. 관련근거 및 추진개요

가.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 ※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자태그 의무화 (2014. 6.22 시행)

나. 추진개요

- 사 업 명 : 지방자치단체 전자태그 부착사업
- 사업기간 : '09. 6월 ~ '10. 12월(1년 6월)
- 유지보수 : 각 자치단체별로 유지보수 계약체결·운영

□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제5조 (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금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도서대장
5.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제25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년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별표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 물품의 분류

-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2)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구분 기준

- (1) 비 품 -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 ② 삭제
 - ③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 (2) 소모품 -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 ② 내용연수가 1년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상태 분류 기준

-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76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조문 체계정비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안 제1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 조문 체계정비 (제2조, 제8조, 제10조, 제16조)

4. 관계법령

“해당없음”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274, FAX 453-22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 개정규칙(안): 별첨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768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대 상 : **서4450 (첨부파일 참조)
2. 기 간 : 2019. 4.17.(수) ~ 5. 2.(목)
3. 내 용
 - 가.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2019년 4월분) 공시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위반항목	우편번호	주소
1	**서4450	한*규	2019-04-16	폐문부재	리플렉터 LED	2153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동 ***호(만수동, *****주택)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774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대 상 : **버4392 (첨부파일 참조)
2. 기 간 : 2019. 4.17.(수) ~ 5. 2.(목)
3. 내 용
 - 가.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2019년 4월분) 공시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위반항목	우편번호	주소
1	**버4392	박*태	2019-04-17	수취인불명	미인증 테일램프, 리플렉터, 앰블럼 LED	39446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길 **-**, ***호(구평동,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7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3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고지서)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부과 및 독촉 고지서를 우편(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대 상 자: **노6671, **누1629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자)
※ 과태료처분 부과 및 독촉 내역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열람가능 함.
3. 공고기간: 2019.04.17. ~ 2019.05.02. 까지
4. 공고내용
 - 가. 납부장소: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
 - 나. 부과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2]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다. 이의신청: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 제1항)
 - 라.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 가산금이 최고 75% 부과(익월까지 가산금3%, 그 후 증가산금 매월1.2%)됨
 - 체납처분: 부동산 등의 압류 후 체납 처분됨
5. 문 의 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032-453-2825)

자동차관리법위반(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부과 및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연번	차량번호	납부 자명	납부자주소	내용	발송일	반송일	과태료	배달결과	미배달 사유	등기번호
1	23노6671	모*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번길 *, ***동 ****호(논현동, *****)	불법등화장치(스마일 등)과태료부과 고지서	2019.02.21.		30,000	배달(본인)		1899688050343
2	23노6671	모*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번길 *, ***동 ****호(논현동, *****)	불법등화장치(스마일 등)과태료 독촉 고지서	2019.04.08.	2019.04.17.	31,260	반송	폐문부재	1899688124801
3	60누1629	백*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동 ***호(만수동, ***아파트)	불법등화장치(글라스 윙, 리플렉터, 앰블럼 LED)과태료부과 고지서	2019.02.26.	2019.03.08.	30,000	반송	기타	1899688054959
4	60누1629	백*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동 ***호(만수동, ***아파트)	불법등화장치(글라스 윙, 리플렉터, 앰블럼 LED)과태료부과 고지서	2019.04.08.	2019.04.17.	31,260	반송	폐문부재	1899688124805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779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4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명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19.04.18.~2019.05.02.

공고대상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1대

공고내용

-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자 미상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19-18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4.16. ○ 견인일 : 2019.05.02.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2번길 27 (간석4동 244-14)
		이하여백

소유주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내역

연 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수취 인명	주소	발송 일자	미배달 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예정)일	보관장소	비 고
1	2019-00180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4동 244-14) 예술로362번길 27	2019.05.02. 이후	견인예정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7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3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고지서)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부과 및 독촉 고지서를 우편(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합니다.

2019년 4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대 상 자: **노0244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자)
※ 과태료처분 부과 및 독촉 내역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열람가능 함.
3. 공고기간: 2019.04.18. ~ 2019.05.03. 까지
4. 공고내용
 - 가. 납부장소: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
 - 나. 부과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2]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다. 이의신청: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 제1항)
 - 라.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 가산금이 최고 75% 부과(익월까지 가산금3%, 그 후 증가산금 매월1.2%)됨
 - 체납처분: 부동산 등의 압류 후 체납 처분됨
5. 문 의 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032-453-2825)

자동차관리법위반(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부과 및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연번	차량번호	납부 자명	납부자주소	내용	발송일	반송일	과태료	배달 결과	미배달사유	등기번호
1	**노0244	김*형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번길 *, *동 ***호(연희동, **빌라)	불법등화장치(리플렉터 LED)과태료 부과 고지서	2019.02.21.	2019.03.05.	30,000	반송	기타	1899688050342
2	**노0244	김*형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번길 *, *동 ***호(연희동, **빌라)	불법등화장치(리플렉터 LED)과태료 독촉 고지서	2019.04.08.	2019.04.18.	31,260	반송	폐문부재	1899688124800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789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의 규정에 따라 폐업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말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직권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내용 참조
3. 공고기간 : 2019. 04. 19.(금) ~ 2019. 05. 10.(금) (21일간)
4. 직권말소 예정일 : 2019. 05. 13.(월)
5. 직권말소 예고 대상 업소

연 번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비고 (행정처분)
1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2017-6)	간석 화이트 PC	김 * 남	남동구 남동대로922번길 36, 103호 (간석동,크리스탈빌딩)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 미이행	직권말소

6.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7. 유의사항

① 당사자(대표자)께서는 상기 처분 사항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 남동구청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은 직접방문 또는 팩스(032-453-2139)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② 만일 공고 기간 내 의견서 제출 및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8. 의견제출 및 문의사항

- 제출기한 : 2019. 05. 10.(금) 18:00까지
- 문의사항 : 남동구청 문화관광체육과 관광진흥팀 (☎032-453-2143)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직권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790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명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19.04.19.~2019.05.03.

공고대상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5대

공고내용

-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자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19-178(2대)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2대)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4.18. ○ 견인일 : 2019.05.03.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80-1 간석여중 옆 골목 주차선 내
	2019-18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4.18. ○ 견인일 : 2019.05.03.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2동 24-1) 용천로 74 정각지구대
	2019-18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4.18. ○ 견인일 : 2019.05.03.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4동 1275 미건참쌀떡 앞
	2019-19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19.04.18. ○ 견인일 : 2019.05.03. 이후 ○ 보관장소 : 견인예정 ○ 방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1동 592-28)논고개로176번길 17 노상
		이하여백

소유주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내역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수취인명	주소	발송일자	미배달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예정)일	보관장소	비고
1	2019-00178	번호판없음 (2대)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3동 80-1 간석여중 옆 골목 주차선 내	2019.05.03. 이후	견인예정	
2	2019-00181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2동 24-1) 용천로 74 정각지구대	2019.05.03. 이후	견인예정	
3	2019-0018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4동 1275 미건찹쌀떡 앞	2019.05.03. 이후	견인예정	
4	2019-0019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1동 592-28) 논고개로176번길 17 노상	2019.05.03. 이후	견인예정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791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러8254 (첨부파일 참조)

2. 기 간 : 2019. 4.19.(금) ~ 5. 7.(화)

3. 내 용

가.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

2019. 4. 1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9-42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 4. 1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 2019. 4. 18. ~ 2019. 5. 2. (15일간)
3. 당 사 자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주	소재지	비고
1	일반음식점	1999-0199535	투다리	김○미	인천시 남동구 석정로 518 (간석동)	-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사유 :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7.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032-453-2623)
 - 청문일시 : 2019. 5. 16.(목) 10:00부터 11:00까지(1시간)
 - 청문장소 : 남동구보건소 4층 식품위생과
 - 청문주제자: 남동구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장

8.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실 수 없습니다.
- (5)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식품허가팀 032-453-2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9-5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1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12번길 21 외 2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06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주소 고시일	도로명 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10-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06	2009.07.06	구월동을 관통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4.1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로 306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06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23-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16-18	2012.03.28	서창동 남쪽에서 시작되는 도로임을 인용하여 제명	2019.4.1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서창남로16-18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6-18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661-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12번길	21	2009.11.16	도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4.1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도림로12번길 2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1을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10-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06 (간석동)	2019.4.15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9-5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1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20번길 1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 (5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8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20번길	1	2019.4.1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28번길	53	2019.4.1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3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28번길	57	2019.4.1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05-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52번길	9-8	2019.4.1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05-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52번길	9-6	2019.4.1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9-5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1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220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8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220	2009. 7. 6	간석동을 지나는 도로로 톨산이 있었다는 유래에서 반영	2019. 4. 1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산로 220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20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27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76	2009. 11. 16	덕골이라는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19. 4. 1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덕골로 76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6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5, 4-3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28번길	57	2009. 11. 16	석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 4. 1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산로228번길 57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7을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05-1, 605-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52번길	9-6	2009. 11. 16	석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5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 4. 1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정로552번길 9-6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9-6을 건물번호로 부여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9-55호

우정아파트1동2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우정아파트1동2동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동조 제5항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19. 04. 18.

남 동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우정아파트1동2동 가로주택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265번길 8 (구월동, 우정아파트)
나. 면 적 : 3,472.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우정아파트1동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대표자 박남식)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265번길 8(구월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8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9.04.18.

6.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용도	층수/동수	비고
3,472.9㎡	900.8962㎡	16,209.5154㎡	25.94%	378.27%	공동주택 (120세대) 업무시설 (38호) 근린생활시설 (3호) 부대·복리시설	지하1층 ~지상28층 /3개동	

나.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하단 분양계획 참조)

다.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상가 면적 (㎡)	그 밖의 건축 시설 면적(㎡)	
	계	56.3108㎡ (아파트)	77.2987㎡ (오피스텔)		-	-
계	130	120	38	210.961㎡	-	-
토지등 소유자	60	80	-	-	-	-
보류시설	-	-	-	-	-	-
일반분양	70	40	38	210.961㎡	-	-
임 대	-	-	-	-	-	-

라.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관련 도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공동주택과(☎ 453-6422) 및 해당 정비사업조합에 비치하고 있으며, 조합원과 이해관계인에게 공개됩니다. 끝.